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고
가. 환자분류소	1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비치할 것
나. 응급환자진료구역	1	110	110	· 2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 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다. 음압격리병상	1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 필터링된 급기·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 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라. 일반격리병상	2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을 포함한 격리병상을 3병상 이상

				갖출 것
마. 검사실	1			-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종합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
바. 방사선실(일반촬영실)	1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
사. 처치실	1	15	15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1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것
아. 원무행정실	1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자. 의사당직실	1			의사 2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차. 보호자대기실	1			2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의자, 호출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카. 주차장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비고: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

2. 인력기준

인력	인력기준	비고
가. 의사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나. 간호사	• 응급실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다. 그 밖의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3. 장비기준

장비명	기준
가. 심장충격기	1대 이상
나. 인공호흡기	1대 이상
다. 주입기(Infusion Pump)	5병상마다 1대 이상
라. 초음파검사기	1대 이상
마. 산부인과진찰대	1대 이상
바. 환자감시장치	5병상마다 1대 이상
사. 이동환자감시장치	1대 이상
아. 부착형흡인기	1병상마다 1대 이상
자. 부착형산소(Wall O ₂ unit)	1병상마다 1대 이상
차. 급속혈액가온주입기(Rapid infusion warmer)	1대 이상
카. 보온포	1대 이상
타. CT촬영기	1대 이상. 다만, 종합병원의 CT촬영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파. 일반 X-선 촬영기	1대 이상
하. 이동 X-선 촬영기	1대 이상
거.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너.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